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3. 4. 이용진 의원 외 6인 발의 (의안번호 266호)
나. 회부일자 : 2024. 3. 19.
다. 상정일자 :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3. 21.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2018년 3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을 포함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안 제1조, 안 제3조 ~ 제5조, 안 제7조 ~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나)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조, 안 제15조 ~ 제16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4. 3. 7. ~ 2024. 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을 포함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자하는 것으로,
- 주민참여예산제도 2011년 3월 의무화 이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¹⁾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로 규정되었으나, 2018년 3월 법 제39조²⁾, 2020년 3월, 같은

1) 개정 전>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전문 개정 2011. 8. 4.]

2) 개정 후>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

법 시행령 제46조³⁾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로 확대하였음.

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3)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 또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방법 예시」에서 ‘사업제안→ 사업선정→ 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의 범위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 : “예산편성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를 신설
- 안 제3조(법령준수의무) : “예산편성 시”를 “예산과정과 관련된”으로 개정
- 안 제4조 :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과정에”로 변경
- 안 제5조, 7조, 8조, 9조, 12조, 14조 : “예산편성”을 “예산과정”으로 개정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동안 성북구 조례에는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 21.(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3. 6.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62호)

나. 회부일자 : 2024. 3. 19.

다. 상정일자 :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3.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0.5.30. 선고99추85판결)

나.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1. ~ 2. 21.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76조⁴⁾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⁵⁾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4)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5)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

및 재협의를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우리구는 2006년 12월 29일, 법이 개정된 2016년 이전의 법 제4조제5항⁶⁾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음.
- 그러나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일부개정)⁷⁾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4. 2. 6.>

- 6)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개정 전)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6. 1. 27. 개정 후)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
이 삭제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 그동안 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 16. 1. 27. 개정 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사업추진
으로 인한 재해영향, 재해저감 계획 등의 평가 및 심의를 목적으로
구성·운영되어왔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9년 5월 공문⁸⁾을 통해 법에 따
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로써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
하여야 함을 요청한 바 있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⁹⁾를 살펴보면,

8)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
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 행정안전부 (하천관리과-8223,
2019.5.31.)

가. ~ 나. (생략)

다. 따라서 「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주
시기 바라며, 지자체별 「재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
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끝.

9)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판례 중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

기관위임사무¹⁰⁾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무에 관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적으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10) 「지방자치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유지·관리·호적·경찰사무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기타 국가의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다. 종합 검토 결과

- 동 조례 폐지 후 관련 사무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여겨지고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 폐지 후 관련 사무의 연속성을 위해 구에서는 규칙 제정 등의 조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3. 21.(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3. 6.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61호)
나. 회부일자 : 2024. 3. 19.
다. 상정일자 : 제30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3.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신신재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기획예산과-12353, 2023.10.13.)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띄어쓰기 정비, 기타 오탈자 수정 등 자체발굴 정비과제와 누락되었던 기획정비과제로서 일괄개정 대상으로 선정된 49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통일성을 꾀하고 주민들의 자치법규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인용조문 현행화
- 나) 띄어쓰기 정비
- 다) 기타 오탈자 수정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공원녹지과, 기획예산과, 세무1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의약과 13개 부서와
개정사항 협의

라) 기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1.(목) ~ 2. 21.(수)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제출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동 조례안은 성북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띄어쓰기 정비, 기타 오탈자 수정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으로,
-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며,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문장 표현을 정리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바꿈으로써 입법 의도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동 조례안은 낫표¹¹⁾ 사용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띄어쓰기가 대부분이며, 일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 등을 위해 49개의 조문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제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본문 : 지원 할 → 지원할
- 제2조제7호 :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연금법」
- 제2조제8호 : 「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11) 낫표 [-標] : 세로쓰기에서 사용되는 따옴표의 하나로 이름, 소제목이나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쓰인다.

예) 「 」, [], 『 』

「다문화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4조제1항 : 제3조제1호 → 제3조제1항제1호
- 제4조제2항 : 제3조제7호 → 제3조제1항제7호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제3조제4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 :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 제3조제3항 :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제2항 : 10일전 → 10일 전
- 제11조 : 조례에 규정된 것 →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제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 제2조제1호가목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제2호나목 : 「국적법」 제3조 → 「국적법」 제3조
- 제21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 제1조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8조제1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
- 제19조제3항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37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 회계법」 제18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제40조제2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5조제3항 : 법 제35조제2항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 제9조제2항제1호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2조

제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복지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6조제1항제2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1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 제6조제2항 : (이하 “영” 이라 한다)제14조제4항 →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 제7조제2항제1호 : (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4호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2조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제3조제2항제1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6조제1항 : (이하 “협의회” 라 한다) → (이하 “협의회” 라 한다)

제1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 제2조제1호 :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 →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
같은 조 제3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제4조 : (이하 “의원” 이라 한다) → (이하 “의원” 이라 한다)

제1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

- 제2조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제1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2조 : 「아동복지법」(이하 “법” 라 한다) →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 제5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제6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같은 조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제1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2조제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같은 조 제3호 : 「초·중등교육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제3항제3호 : 「한부모가족 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산사태 취약지역 → 산사태취약지역

제1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 :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 제2조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 제3조제3항제1호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제1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제3조제1호가목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제1항 : 1월 → 1개월
- 제11조제1항 : 각1명 → 각 1명
- 제12조제1항 : 다음 → 다음 각 호의
- 제21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제24조의 제목 : 창의마일리지제 → 창의마일리지제

제2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12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 제21조의3제4호 : 제22조제1항 → 제21조의2제1항

제2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8조제1항 단서 : 제14조제4항 → 제21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 → 법 제36조의3와 시행령 제21조의2
- 같은 조 제3항 : 법 제25조 → 법 제36조의3
- 제11조제3항제1호 : 복지문화국장 → 복지교육국장

제2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7조제2항 : (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 → (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

제2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4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
2항
- 제6조 : 「지방세법」 제4조 → 「지방세법」 제4조
- 제8조제3항제1호 : 「변호사법」 제90조 → 「변호사법」 제90조

제2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

- 제3조 :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

제2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 제2조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나목
- 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
- 제5조제1항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 제8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9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제2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 :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 →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

제2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제1항 :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은 →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 제4조제1항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제2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2조 :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 → 등에게 「서울특별
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2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 제2조제4호 : 청년발전 → 청년 발전

- 제14조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 제15조제5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3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 제16조제2항제2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3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 제2조제2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5조제3호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같은 조 제4호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2조

- 제2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5조제2항제1호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2조,

- 같은 항 제2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같은 항 제3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제3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제2조제5호가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같은 호 나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 같은 호 마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 같은 호 바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조
- 같은 호 사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6조제4항 : 2년 마다 → 2년마다
- 제11조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2조제4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4조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3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 제2조제8호 : 「수의사법」 제17조 → 「수의사법」 제17조

- 제5조제3항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 : 영 제7조제1항 → 영 제16조제1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제8조제2항제4호 : 영 제5조 → 영 제6조
- 제9조제1항 : 규칙 제15조제4항 → 규칙 제21조제3항
- 제10조제2항 : 「수의사법」 제21조 → 「수의사법」 제21조
- 제12조제2항 : 영 제5조 → 영 제6조

제3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제3항제3호 :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제3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9조제1항 : 해당 되는 → 해당되는,
- 같은 항 제1호 : 수행하였거 나 → 수행하였거나
- 제10조제3호 : 적합 하지 → 적합하지

제3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제6조제1항 : 거주 외국인 → 거주외국인
- 제13조제1항 : 거주 외국인 → 거주외국인
- 제14조제1항 : 지역내 → 지역 내
- 제16조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3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 : 상맹방리 266-7 → 상맹방길 398-4
- 제14조 : 「별표 1」 → 별표, 별표 1 → 별표

제3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제1항제3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4조제3항 : 설립사실 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 라 한다)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 같은 항 단서 중 : 설립사실 통보서 → 설립사실통보서, 정하여 →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 제6조제1항 : 절차등 → 절차 등
- 같은 조 제2항 : 가입 (탈퇴) 원서 →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이하 “가입(탈퇴)원서” 라 한다)
- 같은 조 제4항 : 변경등 → 변경 등, 협의회에세 → 협의회에서
- 제7조의 제목 :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의결기관의 의결절차 → 의결 기관의 의결 절차
-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 → 제명 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 대상자

- 의결전 → 의결 전
- 제8조제1항 : 9인이내 → 9인 이내
- 같은 조 제5항 : 협의회위 → 협의회
- 제9조제1항 : 소속공무원중 → 소속공무원 중
- 같은 조 제2항 : 설립기관 → 설립기관
- 제10조제6항 : 회무기록 → 사무기록, 수속회원 → 소속회원
- 제13조의 제목 :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에 제한) →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 [별지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
서 →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중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
의회대표사 →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 [별지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 별지 제2호서식 중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
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 [별지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중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공
무원직장협의회
-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 [별지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

퇴)원서 →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

- 별지 제4호서식 중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0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제3항제2호 중 :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 별표 1의 상황실란 중 : 행정국장 → 행정문화국장
- 별표 1의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란 중 : 220연대 3대대장 → 220연대 1대대장
- 별표 1 : 일자리경제과장 →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별표 1 : 행정지원과 통신실 → 홍보지원과 통신실
- 별표 2 : 복지행정담당주사 → 민원행정담당주사

제4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2조제2항 : 제1항 제1호 → 제1항제1호
- 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2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5조 : 다른 지원 → 따른 지원
- 제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43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7조(포상) 중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 제7조(시행규칙) → 제8조(시행규칙)

제44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제5조제4항제1호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제4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3조제1항 : 사람, 이하 “지도자” 라 한다” → 사람(이하 “지도자” 라 한다)”
- 제6조 : 7% → 7

제4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제2항 : 성북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 성북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
- 같은 조 제3항 : 윤리의식 → 윤리 의식

제47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8조제7호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

- 같은 조 제8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제10조제4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 : 아리랑시네센터(이하 “시네센터” 라 한다) → 아리랑시네센터(이하 “시네센터” 라 한다)”
- 별표1 → 별표 1
- 제6조제1항 :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개인 등(이하 “수탁자” 라 한다) → 개인 등(이하 “수탁자” 라 한다)
- 제14조제1항 : 별표2 → 별표 2, 같은 조 제2항 : 별표3 → 별표 3
- 제2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별표 1의 제목 : [별표1]기능 및 위치 → [별표 1] 기능 및 위치
- 별표 2의 제목 : [별표2]사용료 → [별표 2] 사용료
- 별표 3의 제목 : [별표3]수강료 → [별표 3] 수강료

제4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제2조제2호 :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 제7조제4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

다. 종합 검토 결과

- 동 조례안은 일괄개정 방식으로 용어 순화와 함께 단순한 띄어쓰기, 상위법령 현행화, 조문변경 등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및 안전성, 구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